



고용노동부

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안내 및 구매 관련 협조 요청

---

1.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석면, 금속흡 등 분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인증 받은 방진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3. 이러한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해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단계에서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관내 기업에도 「산업용 방진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」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보건마스크 대체용으로 방진마스크 구매를 지양하시어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공급되고,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 
 ※ 방진마스크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

붙임: 산업용 방진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지방자치단체(243개)

전문위원	<b>서재민</b>	공업사무관	<b>신백우</b>	산업안전과장	<b>고광훈</b>	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	전결 2020. 3. 9. <b>박영만</b>
협조자	산업보건과장 <b>김동욱</b>						
시행	산업안전과-1042		(2020. 3. 9.)	접수			
우	30117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산/		www.moel.go.kr			
		업안전과					
전화번호	044-202-7733	팩스번호	044-202-8092	/ jmseo@korea.kr		/ 대국민 공개	